

의안번호	2217734
의 퇴 인	황운하의원
회 답 일	2026. 4. 30.
추 계 번호	26B172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·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(이하 “청소년유해정보”라 한다)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 <u><신 설> 4.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</u> <u>· 상담 · 교육 및 지원체계의 구축 · 운영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1조(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이용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및 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, 교육, 홍보 등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일부 사업들을 실시 중에 있음

[표 1]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과이용 예방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2026년)
클린인터넷 이용환경조성	아동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·모바일환경 조성 -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,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,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상시점검 등	3,600
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	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·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·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 및 역기능 피해 예방 - 청소년 대상 SNS 중독 등을 포함한 디지털 역기능 관련 교육 및 홍보 등	5,219

자료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